

의안번호	2211830
의 퇴 인	정태호 의원
회 답 일	2025. 10. 2.
추 계 번호	25A3778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및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 설립 등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01.4억원, 2030년 52.1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03.5억원(연평균 60.7억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개정안의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한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민간위원 확대 (안 제9조제1항제4호)	0.2	0.2	0.2	0.2	0.2	1.2	0.2
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의 설립 (안 제48조의2 신설)	101.2	48.8	49.8	50.8	51.9	302.5	60.5
합 계	101.4	49.0	50.0	51.0	52.1	303.5	60.7

주: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 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제1항제4호 (운영위원회의 구성)	○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－ 현행: 11인 이내 → 개정안: 14인 이내	
2	안 제10조의2 신설 (분과위원회 등의 설치)	○ 운영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사, 보수, 혁신 경영평가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	
3	안 제10조의3 신설 (사무처의 설치 등)	○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둠	
4	안 제48조의2 신설 (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의 설립 등)	○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, 임금실태조사, 관련 정책의 조사·연구,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를 설립한다. ○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는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9조제1항제4호(운영위원회의 구성)	○	
2	안 제10조의2 신설 (분과위원회 등의 설치)	×	현재('25년)에도 인사소위원회, 경영평가소위원회, 기능·제도 개선소위원회 등 분과위원회 설치 운용 중
3	안 제10조의3 신설 (사무처의 설치 등)	×	·구체적 사업 규모 등 추정곤란
4	안 제48조의2 신설 (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의 설립 등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향후 민간위원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액은 다음과 같은 가정으로 추계
 -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은 현행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최근 3년간 지급수당 (인당 50만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회의 개최 횟수는 최근 3년간 개최 현황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최근 3년간 연평균 개최 횟수(16회)가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- ‘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설립’에 따른 출연금은 ‘지방공기업평가원’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의 출연금 규모와 동일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- ‘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’ 설립(재단법인)시 출연금은 ‘지방공기업평가원’ 설립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(101.2억원)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
 - 향후 ‘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’에 매년 출연하는 출연금 규모는 최근 3년 (2023~2025년)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‘지방공기업평가원’ 출연금 추이를 기준으로 하여, 동 기간 연평균 증가율(2.1%)만큼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추계

- 개정안 2025년 중 통과될 것을 전제로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액 추계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민간위원 확대(안 제9조제1항제4호)

- (추계방법) 개정안에 따라 민간위원 확대(3명)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액은 민간위원 회의 참석(연 16회)에 따른 수당비용(인당 50만원)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3년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회의 개최는 2022년 18회, 2024년 14회으로 연평균 16회 개최됨

[표 2] 최근 3년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

(단위: 회)

구 분	2022년	2023년	2024년	연평균
회의 개최	18	15	14	16

자료: 기획재정부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최근 3년간 민간위원 1인당 회의비 지급수당은 50만원으로 나타남

[표 3] 최근 3년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민간위원 1인당 회의비 지급 현황

(단위: 만원)

구 분	2022년	2023년	2024년	연평균
민간위원 1인당 회의비	50	50	50	50

자료: 기획재정부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추계결과) 민간위원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2026년 0.2억원, 2030년 0.2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총 1.2억원(연평균 0.2억원) 추계됨
 -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회의 개최(연 16회) 및 민간위원 회의비 지급수당(인당 50만원)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재정소요액 산정: 민간위원 3명 × 회의 개최 횟수 연 16회 × 지급수당(50만원)

[표 4] 향후 민간위원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액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추가재정 소요액	0.2	0.2	0.2	0.2	0.2	1.2	0.2

주: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나.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의 설립(안 제48조의2)

□ (추계방법) ‘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’의 설립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‘지방공기업평가원’의 출연금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- 최초 설립시 출연금은 ‘지방공기업평가원’ 설립시 출연금(101.2억원)¹⁾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
- 최근 3년간(2023~2025년)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‘지방공기업평가원’ 출연금은 총 137.4억원(2023년 44.9억원, 2025년 46.8억원)에 달하며, 동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약 2.1%로 나타났다

[표 5] 최근 3년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현황

(단위: 억원, %)

구 분	2023	2024	2025	누적	연평균 증가율
출연금	44.9	45.7	46.8	137.4	2.1

주: 지방공기업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및 공단의 출연금의 합

자료: 지방공기업평가원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추계결과) ‘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’ 출연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2026년 101.2억원, 2030년 51.9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총 302.5억원(연평균 60.5억원) 추계됨

- ‘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’ 설립시 출연금은 ‘지방공기업평가원’ 설립시 출연금(101.2억원)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- 매년 출연하는 출연금은 최근 3년(2023~2025년)간 ‘지방공기업평가원’ 출연금의 연평균 증가율(2.1%)만큼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추계

1) 지방공기업평가원 답변자료

[표 6] 향후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 설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액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추가재정 소요액	101.2	48.8	49.8	50.8	51.9	302.5	60.5

주: 2026년 출연금은 최초 설립 출연금 적용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주계세제총괄과	최천규	권아영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653	choi1009@assembly.go.kr